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21조에 의하여 제 33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제1항 및 정관 21조 2항에 따라 1%이하 주주분들께의 통지를 전자공시 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7월 8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33 1층 세미나룸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부의사항》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차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33

주식회사 유진로봇

대표이사 박성주 (직인생략)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1. 개 요

○ 표준정관 등 관련규정의 개정반영과 정관조문 정비.

- 신규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 주로 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전환사채발행한도의 변경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한도의 변경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jinrobo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회사광고방법의 변경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

1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사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함)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 이후의 기밀 유지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장,부사장,전무,상무 및 등기임원 포함) 에게 적용된다.
단, 대상임원은 유진로봇 입사후 총 재직기간이 만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한다.

3조)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임원 퇴직금의 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운영한다.

- 1. 기본 지급액: 임원의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 * 지급배율(별첨) * 임원근속년수
- 2. 지급배율은 다음과 같다.

직책	지급배율	추가위로금
CEO (대표이사/사장)	1.5	해당없음
Deputy P (부사장)	1	해당없음.
Executive VP (전무) / 등기임원 (단, 비상근 임원 제외)	1	해당없음.
Managing VP (상무)	0.5	해당없음.

4조) 임원 근속년수

- 1. 임원근속년수는 해당직급 선임일자로부터 실제 근무종료일까지로 한다.
- 2. 임원의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월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5조) 경쟁사 정보 유출 방지 – Non-Disclosure Agreement

- 1. 퇴임 또는 퇴사하는 임원은 퇴직 후 2년간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경쟁사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 2. 임원들은 회사의 핵심 전략과 기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3.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조) 임원 퇴직금 지급 절차

- 1. 지급이 확정된 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 2.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한다.
 - ① 임기만료, 정년퇴직의 경우, 회사 요청에 의한 사직의 경우

② 사임

단, 회사의 합리적인 제안 및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제외함.

③ 재임 중 사망 또는 질병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할 경우

단, 중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는 제외함.

7조) 세금처리

퇴직금은 퇴직소득 등 세법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후 지급된다.

8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내규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퇴사한 임원은 제외한다.

2) 기존에 지급하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의한 퇴직금은 별개로 한다.

(적용시기)본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